

● 제319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23. 6. 2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878, 903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안일 : 2023. 5. 30.
- 다. 회부일 : 2023. 6. 1.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1조 4,961억 1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억 3천2백만원(0.6%)이 증액되었음.

〈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예산	2023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1,463,101	1,496,111	1,486,879	9,232(0.6%)	
일반회계	1,452,362	1,488,644	1,479,745	8,899(0.6%)	
세외수입	경상적	485	627	627	0(0.0%)
	임시적	63,383	73,678	73,651	27(0.0%)
지방교부세	30	0	0	0(0.0%)	
국고보조금등	1,064,353	1,136,088	1,130,083	6,005(0.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24,111	278,251	275,384	2,867(1.0%)	
균형발전특별회계	10,739	7,467	7,134	333(4.7%)	
국고보조금 등	9,409	7,081	7,081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30	386	53	333(628.3%)	

나. 세출예산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3조 1,605억 2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4억 5천1백만원(2.3%) 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예산	2023년도		증감(비율) (기정예산대비)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2,983,635	3,160,521	3,088,070	72,451(2.3%)
소계(일반회계)	2,943,871	3,128,325	3,055,874	72,451(2.4%)
행정운영경비	894	1,045	1,045	0(0.0%)
재무활동	8,869	8,584	2,022	6,562(324.5%)
사업비	2,934,108	3,118,696	3,052,807	65,889(2.2%)
소계(특별회계)	39,764	32,196	32,196	0(0.0%)
사업비	39,668	30,866	30,866	0(0.0%)
재무활동비	96	1,330	1,330	0(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II.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안일 : 2023. 5. 30.
- 다. 회부일 : 2023. 6. 1.

2.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

-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 금액 증가로 지출계획의 예치금을 당초 473백만원에서 381백만원증가한 854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표〉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수입계획〉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			
구분	'23년(A) 당초예산	'22년(B) 결산반영	증감 (B-A)	구분 (정책사업)	'23년(C) 당초 예산	'23년(D) 변경(안)	증감(D-C) (증감률)
계	1,473,476	1,854,724	381,248	계	1,473,476	1,854,724	381,248
예치금회수	376,778	758,026	381,248	비용자성사업비	980,000	980,000	-
일반회계	100,000	100,000	-	기본경비	20,000	20,000	-
전입금	964,858	964,858	-	예치금	473,476	854,724	381,248 (80.5%)
이자수입	31,840	31,840	-				
기타수입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제출 사유

- 2023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라 함)은 3조 1,605억 2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880억 7천만원에서 724억 5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2.3%)하여 제출되었음.

〈표〉 2023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률
(x1,137,165)	(x1,143,170)	(x6,005)	
3,088,070	3,160,521	72,451	2.3%

- 금번 추경 편성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총지출 증가액(724억 5천1백만원)은 서울시 전체 총지출 증가액에 대비하면 2.4%에 해당함.

〈표〉 서울시 및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총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3년도 제1회 추경안(A)	'23년도 기정예산(B)	증감	
			증감율(%)	(A-B)
◇ 서울시총예산(a)	50,282,757	47,241,926	6.4%	3,040,831
◇ 여성가족정책실(b)	3,160,521	3,088,070	2.3%	72,451
※ 비중(b/a)(%)	6.3%	6.5%	-	2.4%

- 서울시는 금번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경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 1탄·2탄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②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법정 의무경비를 편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총 59건의 사업에 대하여 추경안을 제출함.

- 총 59건 가운데 시 자체사업 29건 중 25건은 증액 사업이고 4건은 감액 사업이며, 국비매칭 사업 30건 중 26건은 증액 사업이고 5건은 감액 사업임.

2 세입 및 세출 총괄

가. 세입

1) 세입예산 총괄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1조 4,961억 1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억 3천2백만원(0.6%)이 증액되었음.

〈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예산	2023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1,463,101	1,496,111	1,486,879	9,232(0.6%)
일반회계	1,452,362	1,488,644	1,479,745	8,899(0.6%)
200 제외수입	63,868	74,305	74,278	27(0.0%)
210 경상적제외수입	485	627	627	0(0.0%)
220 임시적제외수입	63,383	73,678	73,651	27(0.0%)
300 지방교부세	30	0	0	0(0.0%)
311 특별교부세	30	0	0	0(0.0%)
500 보조금	1,064,353	1,136,088	1,130,083	6,005(0.5%)
510 국고보조금등	1,064,353	1,136,088	1,130,083	6,005(0.5%)

구분	2022년예산	2023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24,111	278,251	275,384	2,867(1.0%)
710 보전수입등	2,986	5,994	3,127	2,867(91.7%)
720 내부거래	321,125	272,257	272,257	0(0.0%)
균형발전특별회계	10,739	7,467	7,134	333(4.7%)
500 보조금	9,409	7,081	7,081	0(0.0%)
510 국고보조금등	9,409	7,081	7,081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30	386	53	333(628.3%)
710 보전수입등	1,330	386	53	333(628.3%)

- 세입 증액의 주요 원인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의 증액으로 국고보조등이 기정예산 1조 1,300억 8천3백만원 대비 60억 5백만원이 증액(0.5%)된 1조 1,360억 8천8백만원임.
- 또한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중 보전수입등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전년도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일반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각각 28억 6천7백만원과 3억 3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출

1) 세출예산 총괄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예산액은 3조 1,605억 2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4억 5천1백만원(2.3%)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예산	2023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2,983,635	3,160,521	3,088,070	72,451(2.3%)
소계(일반회계)	2,943,871	3,128,325	3,055,874	72,451(2.4%)
행정운영경비	894	1,045	1,045	0(0.0%)
재무활동	8,869	8,584	2,022	6,562(324.5%)
사업비	2,934,108	3,118,696	3,052,807	65,889(2.2%)
소계(특별회계)	39,764	32,196	32,196	0(0.0%)
사업비	39,668	30,866	30,866	0(0.0%)
재무활동비	96	1,330	1,330	0(0.0%)

2) 부서별 세출예산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추경안은 총 7개 부서에서 편성하였으며, 추경안 편성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이돌봄담당관 326억 4천2백만원(9건), 영유아담당관 155억 1천만원(3건), 가족다문화담당관 150억 8천2백만원(17건), 아동담당관 54억 2천8백만원(13건), 양성평등담당관 31억 8천5백만원(12건), 1인가구담당관 6억 6천4백만원(4건) 순으로 증액편성하고, 아동복지센터는 6천만원(1건)을 감액편성하였음.

〈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부서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증감률 (B/A)	건수
계	(x1,137,165) 3,088,070	(x6,005) 72,451	(x1,143,170) 3,160,521	2.3	59
양성평등담당관	(x18,932) 97,728	(x2,733) 3,185	(x21,665) 100,913	3.3	12

구분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증감률 (B/A)	건수
영유아담당관	(x679,144) 1,901,256	(x1,990) 15,510	(x681,134) 1,916,766	0.8	3
아이돌봄담당관	(x32,159) 149,089	(x52) 32,642	(x32,210) 181,730	21.9	9
아동담당관	(x317,812) 671,162	(x1,099) 5,428	(x318,912) 676,591	0.8	13
가족다문화담당관	(x89,012) 252,967	(x67) 15,082	(x89,080) 268,049	6.0	17
1인가구담당관	(x32) 14,651	(x64) 664	(x95) 15,315	4.5	4
아동복지센터	(x74) 1,217	(x0) △60	(x74) 1,157	△4.9	1

3)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 여성가족정책실 세출예산 추경안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총 59개 사업 중 51개 사업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 먼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증 317억 5천1백만원),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증 102억 4천1백만원),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증 31억 3천6백만원),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3억 2천1백만원) 등 총 20개 사업이 자체시비 사업의 신규 추진 및 확대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음.
 - 영유아 보육료 지원(증 123억 9천만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증 27억 1천6백만원) 등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해 총 30개 사업이 증액 되었음.
- 감액사업은 총 9건으로 임신부 교통비 지원(감 46억 5천4백만원), 권역별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감 12억 2천3백만원)등 불용이 예상되는 자체시비 사업 4건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감 2억 2천만원) 등 5건이 국비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임.

〈표〉 여성가족정책실 세부사업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증감액 (B)	추경예산 (A+B)	증감사유 및 내역
	합 계 (여성가족정책실)	(x1,137,165) 3,088,070	(x6,005) 72,451	(x1,143,170) 3,160,521	
	소 계 (양성평등담당관)	(x18,932) 97,728	(x2,733) 3,185	(x21,665) 100,913	
1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x11,232) 17,291	(x2,542) 2,716	(x13,774) 20,006	<국비매칭> ○ 여성가족부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새일여성인턴, 직업교육훈련, 운영비 등 증액 : 2,716백만원 - 인턴 수 18명 증가(1,145명→1,163명) -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 12개 증가(147→159개)
2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탄생	(x0) 16,549	(x0) 321	(x0) 16,870	<자체시비> ○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신규사업 추진(9월 시행) - 사업비(시술 지원비) : 300백만원 - 인건비 260만원*4개월*2명: 21백만원
3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x1,667) 3,537	(x120) 240	(x1,787) 3,777	<국비매칭> ○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해바라기센터(5개소) 운영비 증액 - 영상증인신문 시행 관련 인력 총원 반영 등 : 240백만원
4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x1,269) 4,402	(x5) 10	(x1,274) 4,412	<국비매칭> ○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17개소) 운영비 증액 - 난방비 추가 지원 : 600천원*17개소
5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x215) 428	(x1) 2	(x216) 430	<국비매칭> ○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2개소) 운영비 증액 - 난방비 추가 지원 : 600천원*2개소 -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 384천원
6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x412) 824	(x48) 96	(x460) 920	<국비매칭> ○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사업비 증액 - 성폭력피해자(불특정다수) 의료비, 간병비 지원 : 96백만원
7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보조)	(x2,362) 4,724	(x6) 13	(x2,368) 4,737	<국비매칭> ○ 여성가족부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21개소) 운영비 증액 - 난방비 추가 지원 : 60만원×21개소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증감액 (B)	추경예산 (A+B)	증감사유 및 내역
8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자체)	(x0) 3,183	(x0) △300	(x0) 2,883	<p><자체시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감소추세로 기존 시설 입소정원 축소, 시립시설 1개소 폐지 및 종사자 입·퇴사 등에 따른 인건비 감소 : △300백만원 - 시설폐지 및 정원 축소 : △180백만원 -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호봉 조정 : △120백만원
9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x431) 862	(x△12) △25	(x419) 837	<p><국비매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국시비 매칭 감액 : △25백만원 - 보호시설 이용자 감소 추세로 기정예산 대비 약3% 감액내시
10	시립 늘푸른교육센터 운영(보조)	(x85) 169	(x0) 1	(x85) 170	<p><국비매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증액 - 60만원 : 60만원×1개소
11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신규	(x0) 0	(x23) 46	(x23) 46	<p><국비매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스톱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신규 추진 - 스톱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 22,900천원*2개소
12	국고보조금 반환	(x0) 0	(x0) 67	(x0) 67	<p><자체시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8건) : 67백만원
소 계 (영유아담당관)		(x679,144) 1,901,256	(x1,990) 15,510	(x681,134) 1,916,766	
13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x0) 54,798	(x0) 1,685	(x0) 56,483	<p><자체시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액보육료 단가 인상분(6%) 반영 : 31,556백만원 → 33,241백만원 (증 1,685백만원) - 차액보육료(일반) ※시:구=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 11,800원×7,692명×10개월×70% ▶(4-5세) 11,300원×13,053명×10개월×70% - 차액보육료(법정저소득층) ※시:구=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 11,800원×73명×10개월×50% ▶(4-5세) 11,300원×256명×10개월×50%
1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x19,420) 115,292	(x545) 1,435	(x19,965) 116,727	<p><국비매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22.12월 말)에 따른 사업비 증액(증 1,435백만원) - 교사겸직원장수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천원 × 2,018명 × 79%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증감액 (B)	추경예산 (A+B)	증감사유 및 내역
15	영유아 보육료 지원	(x281,746) 523,101	(x1,445) 12,390	(x283,191) 535,491	<p><국비매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세 영아 어린이집 이용 증가 등 예상 소요액 반영(증 12,39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 514천원×273명×12개월×83.5% - 1세: 452천원×3,749명×12개월×83.5% - 2세: 375천원×940명×12개월×83.5% - 기관보육료: (382천원×476명×12개월×83.5%)+2,295천원 - 국고보조금 -11,347,454천원 ※ 필요한 국고보조금 127.9억원 중 14억 '22.12월말 반영(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
소 계 (아이돌봄담당관)		(x32,159) 149,089	(x52) 32,642	(x32,210) 181,730	
16	아이돌봄 지원 	(x0) 5,766	(x0) 50	(x0) 5,816	<p><자체시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모니터링 비용 증액 : 3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인척 육아조력자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비용 ○ 교육영상 제작 비용 증액 : 2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인척 육아조력자 돌봄역량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영상 제작
17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신규	(x0) 0	(x0) 1,435	(x0) 1,435	<p><자체시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사업비 신규 증액 : 1,36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인척 조력자 돌봄비 1,140,000천원 - 민간기관 이용권 225,000천원 ○ 홍보 및 매뉴얼제작, 부정수급 방지 교육 영상 제작비용 증액 : 70백만원
18	권역별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x0) 1,523	(x0) △1,223	(x0) 300	<p><자체시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북권 사업실행 전, 유관부서 선행 절차(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필요로 예산 불용 방지를 위해 감추경 : △1,22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 : △1,323백만원 -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 100백만원
19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x0) 21,425	(x0) 31,751	(x0) 53,176	<p><자체시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 850백만원 ○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 30,733백만원 ○ 양천 키즈카페 시립2호점 운영 168백만원
20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자체) 	(x0) 4,051	(x0) 128	(x0) 4,179	<p><자체시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천(7호) 거점형 키움센터 신규 개소를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증액 : 12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아이 차량 라스비 및 시설 운영비 등 74백만원 - 연계돌봄 및 특화프로그램 개발 사업비 54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증감액 (B)	추경예산 (A+B)	증감사유 및 내역
21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보조)	(x18) 60	(x1) 4	(x19) 64	<국비매칭> ○ 2023년도 국비 확정내시 결과 반영 : 4백만원 - 양천(7호)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비 4개월분 반영
22	거점형 키움센터 인건비 지원	(x159) 2,885	(x10) 217	(x169) 3,102	<국비매칭> ○ 양천(7호) 거점형 키움센터 신규 개소 및 노원(1호) 정원 부족분 증원을 위한 인건비 증액 : 217백만원
23	거점형 키움센터 기자재비 지원	(x0) 288	(x40) 267	(x40) 555	<국비매칭> ○ 양천(7호) 거점형 키움센터 신규 개소를 위한 기자재비 증액 : 267백만원
24	국고보조금 반환	(x0) 325	(x0) 13	(x0) 338	<자체시비> ○ 국고보조금 고지서 발급에 따른 증액 : 13백만원 -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소 계 (아동담당관)		(x317,812) 671,162	(x1,099) 5,428	(x318,912) 676,591	
25	아동친화도시 추진 어린이	(x0) 322	(x0) 130	(x0) 452	<자체시비> ○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발표('23.5.3)에 따른 사업 추진 - 어린이 정책참여단 운영 : 50백만원 - 서울 어린이 꿈페스타 개최 : 100백만원 - 아동 정책발표회 : △20백만원
26	요보호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x2,901) 11,891	(x420) 1,521	(x3,321) 13,412	<국비매칭>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추가채용 종사자(32명) 인건비, 동절기 난방비 추가 지원분 반영 : 1,521백만원
27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신규	(x0) 0	(x0) 584	(x0) 584	<자체시비> ○ '23년 하반기 서울시 대중교통비 인상 계획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1,884명 × 1,550원 × 20일 × 2회 × 5개월 = 584백만원
28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 동) 자립지원	(x0) 4,464	(x0) 68	(x0) 4,532	<자체시비> ○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및 꿈나눔하우스 (자립형그룹홈) 관리비 등 편성 : 68백만원 -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미운영 꿈나눔하우스(3개소) 관리비 : 38백만원 - 노후 꿈나눔하우스 보강공사 : 30백만원
29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자립지원 사업비)	(x593) 1,187	(x186) 372	(x779) 1,559	<국비매칭>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사례관리비 증액(30만원 → 40만원) 반영 : 372백만원 - 310명*100천원(증액분)*12개월 = 372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증감액 (B)	추경예산 (A+B)	증감사유 및 내역
30	취약계층 이동통합서비스 지원	(x3,676) 4,780	(x33) 42	(x3,709) 4,822	<국비매칭>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이동통합사례관리사 인원 증가 (100명 → 102명) 반영 : 42백만원
31	전문기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x144) 360	(x△24) △60	(x120) 300	<국비매칭>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 : △60백만원 - 예상 지원아동 감소분(30명 → 25명) 반영
32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특수목적형, 토요운영)	(x259) 562	(x28) 60	(x287) 622	<국비매칭>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량 조정 반영 : 60백만원 - 특수목적형(63개소 → 78개소) : 72백만원 - 토요운영(103개소 → 98개소) : △12백만원
33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x3,244) 8,386	(x△110) △220	(x3,134) 8,166	<국비매칭>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비 변경분 반영 : △220백만원 - 동작구 아동보호전문기관 '23. 12월말 설치에 따른 운영보조금 전액 감액 등 반영
34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x300) 600	(x300) 600	(x600) 1,200	<국비매칭> ○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서대문구 구립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반영 : 600백만원
35	이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	(x1) 2	(x15) 30	(x16) 32	<국비매칭>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서울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 추진 : 30백만원
36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보조)	(x758) 1,895	(x253) 313	(x1,011) 2,208	<국비매칭>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신규설치 쉼터 1개소(서대문구) 리모델링비 편성 : 313백만원
37	국고보조금 반환	(x0) 329	(x0) 1,988	(x0) 2,317	<자체시비> ○ 국고보조금 반환 편성(총 22건) : 1,988백만원
	소 계 (가족다문화담당관)	(x89,012) 252,967	(x67) 15,082	(x89,080) 268,049	
38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	(x76) 152	(x20) 40	(x96) 192	<국비매칭> ○ 여성가족부 변경내시 반영(증액)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장애인 시설 전환에 따른 기능보강비 증액 반영 및 매칭 시비 편성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855호, 2023.3.30.)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증감액 (B)	추경예산 (A+B)	증감사유 및 내역
39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x1,215) 3,314	(x30) 30	(x1,245) 3,344	<국비매칭> ○ 여성가족부 변경내시 반영(증액) - 퇴소자 자립정착금 국비 증액 반영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3033호, 2022.12.28.)
4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x27) 52	(x0) 1	(x27) 53	<국비매칭> ○ 여성가족부 변경내시 반영(증액) - 국고보조금 1,304천원 증액에 따른 매칭 시비 추가편성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3033호, 2022.12.28.)
41	서울시 가족센터 운영 	(x0) 1,544	(x0) 20	(x0) 1,564	<자체시비> ○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필수 운영경비 편성 - 본인인증(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 16,846천원 - 문자발송(서비스 이용 편의) : 3,510천원
42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	(x1,387) 5,631	(x5) 8	(x1,392) 5,639	<국비매칭> ○ 여성가족부 변경내시 반영(증액) - 자치구 가족센터 난방비 국고보조금 증액 반영 및 매칭 시비 편성(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4369호, 2022.12.28.)
4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x240) 480	(x0) 274	(x240) 754	<자체시비> ○ 청소년부모 가구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자립촉진수당 지원, 청년취업사관학교 우선선발자 교통비 지원 사업 신규 실시(7월 시행) - 아동양육비: 240백만원 · 200명×200천원×6개월 - 자립촉진수당: 25백만원 · 83명×100천원×3개월 - 청년취업사관학교 교통비: 9백만원 · 15명×100천원×6개월
44	임산부 및 별아·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x0) 3,230	(x0) 150	(x0) 3,380	<자체시비> ○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추진 - 가사근로자 지원(숙소, 이동지원 등) : 500천원×100명×3개월
45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x0) 0	(x0) 3,136	(x0) 3,136	<자체시비> ○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지원 - 홍보비, 매뉴얼 제작 등 40백만원 - 장려금 지원 3,021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증감액 (B)	추경예산 (A+B)	증감사유 및 내역
46	저출생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	(x19) 114	(x△2) △5	(x17) 109	<p><국비매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반영(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 감 4,700천원(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1232호, 2023.3.2)
47	임산부 교통비 지원	(x0) 41,855	(x0) △4,654	(x0) 37,201	<p><자체시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대비 출생을 감소(△4%)를 고려하여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재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1~4월) 평균금액 3,085백만원을 감안, 감 4,654백만원
48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탄생 신규	(x0) 0	(x0) 10,241	(x0) 10,241	<p><자체시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자치구에서 상이하게 지급되던 산후조리경비를 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든 산모의 건강권 강화를 위하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 산후조리경비지원 : 10,148백만원 - 사업홍보 : 30백만원 - 자치구 사업홍보 : 63백만원
49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탄생	(x0) 2,167	(x0) 283	(x0) 2,450	<p><자체시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확대(중위소득 120% → 150%, 본인부담금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지원서비스 제공비 : 283,500천원 · 150가구x70천원(단가)x3회x9개월
5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x56) 112	(x15) 30	(x71) 142	<p><국비매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비 증액(3개구): 30,298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북 : 12,210천원 - 서대문 : 10,000천원 - 구 로 : 8,088천원
51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탄생	(x0) 3,076	(x0) 599	(x0) 3,675	<p><자체시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비 지원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인원 확대(290명 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0명(증가인원)×720원×20일×2회×12개월 = 100,000천원 2) 지원금액 인상(280원 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902명×280원×20일×2회×5개월 = 498,512천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증감액 (B)	추경예산 (A+B)	증감사유 및 내역
52	청소년한부모 이동양육 및 자립지원 탄생	(x414) 832	(x0) 435	(x414) 1,267	<p><자체시비, 국비매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확대 및 자립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탄생프로젝트 관련 (자체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 350명×200천원×6개월 = 420,000천원 ② 자립촉진수당 지원 - 20명×100천원×6개월 = 12,000천원 ③ 검정고시학습비 등 지원 - 5명×1,500천원 = 7,500천원 2) 감추경 (국비매칭) 국시비 매칭사업(50:50)으로 매칭비율에 맞게 시비보조금 수정 : 287,000천원 → 282,000천원
53	전출금(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	(x0) 205	(x0) △164	(x0) 41	<p><자체시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실적 반영 및 중복수혜자(다자녀, 유공자 등) 제외(4,282가구→856가구) - 856가구×4,000원×12개월=△164,436천원
54	국고보조금 반환	(x0) 26	(x0) 4,659	(x0) 4,685	<p><자체시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9건) : 4,659백만원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4,095백만원
소 계 (1인가구담당관)		(x32) 14,651	(x64) 664	(x95) 15,315	
55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x0) 1,811	(x0) 374	(x0) 2,185	<p><자체시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동행서비스의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 증액 : 374백만원 - 15,400원×4시간×23건×22일×12개월
56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운영	(x0) 376	(x0) 104	(x0) 480	<p><자체시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전 자치구 전면시행(15개구→25개구)에 따른 하반기 사업비 증액 : 104백만원 - 2,080천원×10개구×5개월분(8~12월)
57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x32) 53	(x63) 106	(x95) 159	<p><국비매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2개소 추가 선정으로 여성가족부 변경내시 통보('23.3월)에 따른 국시비 매칭분 편성 : 106백만원 - 인건비 63,000천원 = 31,500천원×2개소 - 운영비 4,680천원 = 2,340천원×2개소 - 사업비 38,000천원 = 19,000천원×2개소
58	청년만남, 서울팅 (Seoul meeTing) 탄생 신규	(x0) 0	(x0) 80	(x0) 80	<p><자체시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참여도 및 관심사에 기반한 테마별 프로그램을 통한 만남과 소통의 장 운영: 8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72백만원 = 6회×12백만원 - 홍보비 등 8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증감액 (B)	추경예산 (A+B)	증감사유 및 내역
	소 계 (아동복지센터)	(x74) 1,217	(x0) △60	(x74) 1,157	
59	이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자체)	(x0) 830	(x0) △60	(x0) 770	<자체시비> ○ 촉탁직 전환 예정('23. 1. 1.)이었던 공무직 퇴직('22.12.31.)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감액 : 60백만원 - △59,508천원 = 4,959천원*1명*12개월

가.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사업(계속) <사업별설명서 p.44>

- 2023년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은 165억 4,932만원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남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 출연금을 3억 2,072만원을 증액하여 168억 7,004만원으로 편성·제출하였음¹⁾.

<표> ‘서울여성가족재단 지원’ 사업, 추경안 명세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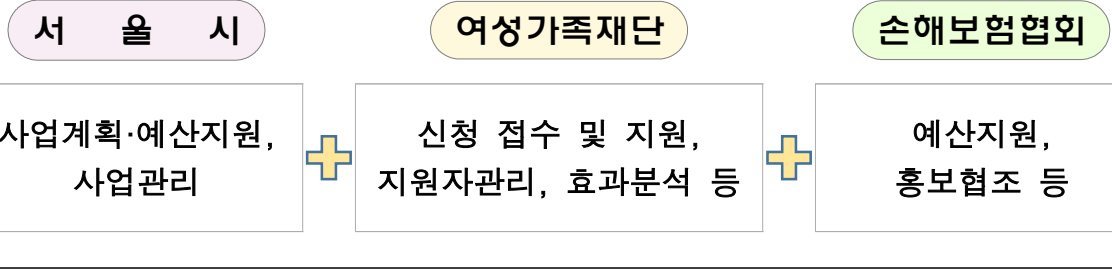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 16,870,042	(x-) 16,549,322	(x-) 320,720	
출연금	(x-) 16,870,042	(x-) 16,549,322	(x-) 320,720	○ 남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추진 320,720천원 - 사업비(시술 지원비) 300명*1,000천원 - 인건비 2,590천원*2명*4개월

- 금번 추경안을 통해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는 남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30~49세 여성(미혼 포함) 또는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20~29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시술 비용의 50%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여성·가족분야 전문기관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사업을 수행함.
- 또한 손해보험협회와 협약체결 및 기부금 기탁을 통해 남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시와 손해보험협회가 각각 5:5로 분담하여 지원할 예정임.
 - 지난 5월 25일에 손해보험협회와 여성가족재단 간에 3년간 남자동결 시술비용(30억원) 및 다태아 자녀안심보험(10억원)의 기탁금품에 대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음²⁾.

1)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이 제출되었음.(의안번호:11-892)
 2) 서울특별시, 시민협력과-6713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30~49세 여성(미혼 포함)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 있는 20~29세 여성
- 지원내용 : 시술비용 50%, 최대 200만원(생애 1회지원)
- (포함)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 (제외)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서울시와 손해보험협회 시술비 지원 분담('23~'26년, 4년간) 각 50%
- 지원규모 : 총 300명
- 예산(안) : 321백만원 ('23년도)
- 수행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추진체계 : 3자 협력



- 서울특별시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초저출산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2017년 32.6세에서 2022년 33.5세³⁾로 계속해 상승하고 있음.
- 미래 출산 의지가 있는 대상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경안 예산편성의 목적적합성과 시급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으로 자칫 난임의 문제가 없는 여성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가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임.
- 과배란 유도 주사 등 난자동결 시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포

3) 통계청, 2022년 출생·사망통계

함하여 시술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 피시술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총괄하는 서울시와 수행하는 여가재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임.

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신규) <사업별설명서 p.96>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에게 4촌 이내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서비스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금번 추경안은 전액 시비로 14억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추경안 명세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 1,435,000	(x-) 0	(x-) 1,435,000	
사무관리비	(x-) 70,000	(x-) 0	(x-) 7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홍보비 30,00천원 - 포스터 제작, 기획기사 등 30,000천원 ○ 사업 매뉴얼 제작 및 인쇄비 20,000천원 - 디자인 및 편집 9,500천원 - 인쇄비 15,000원*700부 ○ 부정수급 방지 교육영상 제작비 - 20,0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x-) 1,365,000	(x-) 0	(x-) 1,36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1,140,000천원 - 300천원*3,800명*2개월('23.11~12월)*50%(시비분) - 사업별 BI개발 및 제작 10,000천원*3개 ○ 민간기관 이용권 225,000천원 - 300천원*500명*3개월('23.10~12월)*50%(시비분)

- 추경안 편성의 주요내용은 ① 사업홍보비(3천만원), 사업 매뉴얼 제작 및 인쇄비(2천만원), 부정수급 방지 교육영상 제작비(2천만원) 등 사업 추진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무관리비와 ②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11억 4천만원)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2억 2천5백만원) 비용임.

- 추경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①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 ② 예비비 사용·세출조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상황극복이 곤란한 보충성 ③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하도록 하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시장이 발표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4)’를 통해 안심돌봄분야 핵심과제로 사전 공개 되었으며 당시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예산편성 사전 절차인 보건복지부와 의 사회보장신설및변경협의5)가 2023. 2월말에 마무리6)되어 2023년 본 예산이 아닌 금번 추경안 편성된 것으로 보임.
- 그런데 동 사업은 2023년 9월부터 신청을 받아 실제 아이돌봄비 지원은 10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3개월만 추진될 계획이라는 점과 시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경으로 시급하게 편성하기 보다는 2024년 본예산 심사과정을 통해 1년 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보건복지부의 협의 결과. 조건부 협의완료로 “25년 상반기까지 사업시행 및 성과평가 실시 이후 사업의 지속여부 결정하는 최종 협의완료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돌봄비 범위를 이웃까지 확대하는

4) 서울특별시(2022.8.),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합계획 (’22~’26)”, 양성평등담당관-218, 2022.8.25.

5)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보건복지부(2023.2.28.),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 사회보장조정과-1684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명확한 현장 모니터링 방안 설정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이 제시되었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검토결과〉

검토결과	조건부 협의완료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u>일정기간 사업 시행 및 성과평가 실시 이후 사업의 지속여부 결정을 조건부로 '협의완료'</u>(최종 '협의완료' 절차 이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보미 범위를 4촌으로 제한 부분에 대해 이웃까지 돌봄서비스 제공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필요 * 사업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을 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에 대한 민원 대응 필요 -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현장 모니터링 방안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돌보미 교육, 서비스 평가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 마련 필요 - '25년 상반기까지의 사업시행 결과에 대하여 아래 근거자료*에 기반한 사업평가를 실시한 후, 본 사업의 지속 또는 수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완료를 하고자 함(추후 성과평가 결과 제출 필요) * ①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등에 미친 영향산출, 성과 중심 지표 ② 부정수급·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한 투입지표 및 성과지표 ③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투입지표 및 성과지표

- 동 사업에 따른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에는 부정수급 방지 교육만 포함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이나 돌보미 교육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는 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나 영유아 돌봄에 관한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다. '권역별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계속) <사업별설명서 p.100>

- '권역별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숲과 연계한 놀이문화를 주도하는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서울혁신파크 내(은평구 통일로 684)에 건립하기 위하여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임.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위 치	은평구 통일로 684 일대(녹번동 7번지)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3층(연면적 5,506㎡) / 사업면적 2,788㎡
용 도	문화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주요공간	기획·상설 전시체험실, 예술실험실, 관찰탐구실, 상상공방, 야외놀이숲, 모험가의 탐험, 영유아놀이실, 편의공간 등
사업기간	2015~2027년
총사업비	424억원

- '23년도 동 사업의 예산은 15억 2,300만원으로, 추경안은 설계비 등 13억 2,300만원을 감액하고 용역비 1억을 증액하여 3억원(80.3% 감소)이 편성되었음.

<표>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 300,000	(x-) 1,523,000	(x-) Δ1,223,000	
연구용역비	(x-) 200,000	(x-) 200,000	(x-) 0	
시설비	(x-) 100,000	(x-) 1,323,000	(x-) Δ1,22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보상비 및 설계용역비 제외 Δ1,873천원 - Δ100,000,000원(설계보상비) - Δ1,223,000,000원(설계용역비) ○ 건축기본구상 및 건립계획 변경 용역비 100,000천원 - 100,000,000원*1식

-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은 2014년 서울혁신파크 조성계획에 따라 2017년에 시설 건립을 위한 단독 추진계획을 세웠음. 이에 따라 2018년 타당성 조사 수행 중 계획을 변경(2018년, 1차)하였으나,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기술용역 추진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재차 변경(2019년, 2차)하고 2019년에 서울시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승인을 완료하였음.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 추진 경과

- 서울혁신파크 조성계획 수립(사회혁신담당관) : '14. 7. 2.
 - 서울혁신파크 마스터플랜 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신축 포함, '17년도 설계 실시
 - 건립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서울연구원) 실시 : '15. 7.~12.
 - ➔ 최종보고서 다양한 의견수렴, 자연친화·체험놀이 강화 필요 의견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용역(주터파트) 실시 : '16. 6.~10.
 -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기본계획 수립 : '17. 1.15.
 - 타당성조사 약정체결 및 중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7.5.~'18.2.
 -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기본계획 변경 (1차) : '18. 1.26.
 - 사업부지 대지경계 설정, 건축면적 증가, 야외숲 조성계획 구체화 등
 - 건축기본계획 보완을 위한 기술용역 추진 : '18. 9.~12.
 -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기본계획 변경 (2차) : '19. 3.27.
 - 부지내 경사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로 추진, 야외숲 면적 축소 등
 - 시 투자심사 완료 (조건부 승인) : '19. 5.30.
 - 운영적자 최소화, 교통·주차·안전대책, 옥상녹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 (조건부 승인) : '19. 7.11.
 - 건축설계시 비오톱·경사도 반영, 다양한 프로그램 설계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 '19. 9. 6.
 - 콘텐츠 기획 학술용역 추진 및 건립자문위원회 자문 : '20. 3.~
 - 예술과 자연을 테마로 융복합적 경험 및 자발성을 살리는 방향의 공간기획
 - 관련부서 자문 및 은평구 총괄건축가 의견 (시 도시관리과, 은평구) : '20. 9.
 -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임야 제외 필요, 국유지 매입 및 접도요건 충족 필요
- ※ 은평구 재무과 의견(당초 '19.8.19.) 국유지(도로) 무상사용 가능 ⇒ 취득시에만 1년 무상사용 가능

○ 설계 의뢰 前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도시공간개선단) : '20. 8.~9.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 시행('19.12.19)으로 설계의뢰 前 공공건축 사전검토 법정 필수사항

➔ 설계공모 전 사업범위 확정, 전면부 국유지 확보(509㎡) 필요

➔ 혁신파크 전체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추진

◆ 서울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시기 변경 : '20.10월 ⇒ '21.10월

※ 혁신파크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된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조성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2km 이상 거리도 단일 교지 인정) 선행이 필요,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중(10월 입법예고 예정)

○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기본계획 변경(3차) : '20.10.14.

- 사전검토 및 관련부서 의견 반영(임야 제외, 국유지 매입, 도시계획시설로 추진)

○ 국유지 매입 위한 현황측량(2회) : '21. 1~3월

○ 혁신파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미래공간기획관) : '21. 10.~23.1.

○ 혁신파크 부지 직주락 융복합도시 조성계획(미래공간기획관) : '22.12.

- 기본계획에서 혁신파크 내 서북권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신축계획 반영

○ 설계공모 수요 제출('22.7), 설계용역비 '23년 본예산 반영('22.)

○ 국유지(논번동 7-4) 확보('23.1.)

○ 서북권 상상나라 확충 1부시장 현안보고('23.5.)

- '23년 추진일정 변경보고 : 설계공모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선행

○ 그러나 2019년 12월 19일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건축물 건립시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가 의무화되어,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의 접도요건 충족을 위해 국유지를 확보하고 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추진하도록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2020년, 3차)하고, 국유지 확보와 함께 설계공모 수요 제출('22.7.) 후 설계용역비를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음.

○ 금번 추경안은 설계공모 시행 전, 혁신파크 전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세부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지의 지적선 분할 등)를 위한 사전 절차의 선행이 필요한 바, 연말 설계비 불용 방지를 위해 설계보상비 및 용역비 예산 전액을 감추경하려는 것임.

- 금번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등의 감액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감추경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그러나 2014년에 최초 계획 발표 이후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술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관련한 절차와 공정에 따라 계획의 반복적인 변경으로 이미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된 사업인 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익이 줄어들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보다 세심한 계획과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성 있는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라.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계속) <사업별설명서 p.104>

-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은 부모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아동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키즈카페를 조성하여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임.
- ‘23년도 동 사업의 예산은 214억 2,478만원으로, 추경안은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민간위탁사업비, 자치단체자본보조 등 317억 5,075만원을 증액(148%증가)하여 531억 7,554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 추경안 명세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 53,175,538	(x-) 21,424,784	(x-) 31,750,754	
사무관리비	(x-) 1,008,600	(x-) 183,600	(x-) 825,000	○ 서울형키즈카페머니발행(서울페이상품권) 825,720천원 - 66명*25일*4개월*25개소*25,000원*20%
민간위탁금	(x-) 300,729	(x-) 196,680	(x-) 104,049	○ 양천 키즈카페 시립 2호점 인건비 35,190천원 - 3,910,000원*3명*3개월 ○ 양천 키즈카페 시립 2호점 운영비 68,859천원 - 관리비 19,353,000원*3개월 - 사업비 3,600,000원*1개*3개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2,989,000	(x-) 2,331,000	(x-) 658,000	○ 구립 키즈카페 운영비 증가분(기존 21개소) - (12,750천원*5.5개월*21개소)-(7,000천원*9.8개월*21개소) = 23,250,000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립 키즈카페 운영비 증가분(신규 29개소) - $((12,750\text{천원} \times (3\text{개월} \times 19\text{개소} + 6\text{개월} \times 10\text{개소})) - (7,000\text{천원} \times 3\text{개월} \times 42\text{개소}))$ = 609,750,000원 ○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 현판 및 물품구입비 지원 - 25개소 * 1,000,000원
시설비	(x-) 967,875	(x-) 967,875	(x-) 0	
감리비	(x-) 26,000	(x-) 26,000	(x-) 0	
민간위탁 사업비	(x-) 183,334	(x-) 119,629	(x-) 63,7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천 키즈카페 시립 2호점 기자재비 63,705천원 - $206.165\text{m}^2 \times 309,000\text{원} \times 1\text{회}$
자치단체 자본보조	(x-) 47,700,000	(x-) 17,600,000	(x-) 30,1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립 키즈카페 리모델링비 증가분(증30개소) - $(2,000\text{천원} \times 300\text{m}^2 \times 62\text{개소}) - (1,500\text{천원} \times 300\text{m}^2 + 100,000\text{천원}) \times 32\text{개소}$ = 19,600,000,000원 ○ 구립 키즈카페 리모델링비(추가지원) - $2,000,000\text{원} \times 300\text{m}^2 \times 25\text{개소} \times 20\% = 3,000,000,000\text{원}$ ○ 구립 키즈카페 신,증축비 증가분(증5개소) - $4,000,000\text{원} \times 300\text{m}^2 \times 5\text{개소} = 6,000,000,000\text{원}$ ○ 구립 키즈카페 임차보증금 - $300,000,000\text{원} \times 5\text{개소} = 1,500,000,000\text{원}$

- 추경안 편성의 주요내용은 ①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 관련 전용 서울페이상품권 발행을 위한 사무관리비(825,000천원),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 현판 및 물품구입비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25,000천원), ② 양천 키즈카페 시립 2호점 민간위탁 관련 인건비(35,190천원), 운영비(68,859천원), 기자재비(63,805천원), ③ 구립 키즈카페 운영비 증가분(633,000천원), ④ 구립 키즈카페 설치 관련 설치비 지원단가 증액 및 조성물량 확대에 따른 설치비 증가분(25,600,000천원), 아동수 대비 놀이시설 인프라 열약한 자치구에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한 구립 키즈카페 리모델링 추가지원비(3,000,000천원), 구립 키즈카페 5개소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비(1,500,000천원)임.
-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⁷⁾’는 금번 추경안을 통해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민간 키즈카페의 참여를 통한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의 활성화와 동시에 공공과 민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편

7)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 추진계획, 아이돌봄담당관-7183, 2023.6.9.

의·위생 등의 지표에서 기준 이상인 민간 키즈카페를 서울형 키즈카페로 인증하고 지원하기 위함임.

- '23년에 시범사업으로 민간 키즈카페 2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 등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전용 상품권 발행을 위한 8억 2,500만원과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 현판 및 물품구입비로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500만원이 금번 추경안에 편성되었음.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 인증규모 : '23년 시범사업으로 25개소 추진 ※ 인증규모는 향후 변동가능
 - 인증절차 : 市 공고 → 區 접수 → 여가재단 심의 → 市 인증확정
 - 인증기준 : 안전·편의·위생 등 시민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항목별 점검
 - 인증기간 : 1년(~ 24. 9월말까지)
 - 지원방법 :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 전용 서울페이상품권 발행으로 민간 키즈카페 이용자에게 시설이용에 대한 할인혜택(20%) 등 부여
 -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민간 키즈카페 중 신청자격을 갖춘 사업자
- 민간 키즈카페 지원 대상이 서울특별시 내 25개소로 서울페이상품권 발행을 통한 20%의 할인혜택이 있더라도 사실상 구당 1개의 민간 키즈카페가 이용처인 상황에서 시민들이 키즈카페 전용페이를 구매하여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를 이용할 유인책은 적다 하겠음. 즉 동 추경안에 따른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 민간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며 향후 집행부서는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인증 규모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인증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설정과 자칫 인증을 받지 못한 나머지 키즈카페들은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임.

- 구립 키즈카페 운영비는 '23년도 본예산 대비 6억 3,300만원(27.2%)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23년도 본예산 편성시 운영비를 개소당 월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인건비(필수인력 2인) 등 지원기준을 상향하고 자치구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금번 추경안에서 운영비를 개소당 월 1,275만원으로 증액하였기 때문이다.

〈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 구립 키즈카페 운영비 관련 산출근거

구 분	2023년 본예산	2023년 추경예산(안)
	서울형 키즈카페 프로그램 운영	
	2,331,000천원	2,964,000천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기존) 7,000천원*9.8개월*21개소 = 1,449,000천원	(기존) 12,750천원*5.5개월*21개소 = 1,472,250천원
	(신규) 7,000천원*3개월*42개소 = 882,000천원	(신규) 12,750천원*3개월*19개소 = 726,750천원
		(전환) 12,750천원*6개월*10개소 = 765,000천원

- 자치구의 운영비 부담을 낮추고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아동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실내형 놀이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는 인정되나, 유희공간 발굴 등의 지연으로 당초 예정보다 설치가 늦춰지면서 운영비에 대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집행부서는 집행과정에서 연내사용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 행정이 필요해 보임.
- '22년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비를 위해 편성되었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700만원 중 5,920만원이 지출되고 1억 4,780만원이 불용되어 해당 과목에 편성된 예산의 71.4%가 불용되었음.
- 또한 '23년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자치구 지원계획⁸⁾에 따르면 2026년까지 서울형 키즈카페를 총 400개소로 확충할 계획으로 향후

8) '23년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자치구 지원계획, 아이돌봄담당관-2170, 2023.2.13.

개소 수 확충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바, 향후 집행부서는 자치구와의 분담 등 지속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구립 키즈카페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는 '23년도 본예산 대비 301억원(171%)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23년도 본예산 편성시 설치비를 유형 구분없이 m^2 당 150만원 지원하고 물품구입비를 개소당 1억원씩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안에서는 설치비에 물품구입비를 포함하여 리모델링은 m^2 당 200만원, 신·증축시 m^2 당 400만원으로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고 당초 계획한 신규 조성 물량을 32개소에서 67개소로 확대하였기 때문임.

〈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 구립 키즈카페 조성 지원비 관련 산출근거

구 분	2023년 본예산	2023년 추경예산(안)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지원	
	17,600,000천원	47,700,000천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리모델링비) $1,500\text{천원} \times 300\text{㎡} \times 32\text{개소}$ = 14,400,000천원	(리모델링) $2,000\text{천원} \times 62\text{개소} \times 300\text{㎡}$ = 37,200,000천원
	(물품구입비) $100,000\text{천원} \times 32\text{개소}$ = 3,200,000천원	(신·증축) $4,000\text{천원} \times 5\text{개소} \times 300\text{㎡}$ = 6,000,000천원
		(임차보증금) $300,000\text{천원} \times 5\text{개소}$ = 1,500,000천원
		(인센티브) $2,000\text{천원} \times 25\text{개소}(\text{하위}5\text{개구} \times 3\text{개소} + \text{전환}10\text{개소}) \times 300\text{㎡} \times 20\%$ = 3,000,000천원

-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지원 사업은 매년 전액 시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운영비 및 설치비 지원에 대한 변경은 먼저 설치된 키즈카페와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예산 편성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음.

- 집행기관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에 대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설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마.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신규) <사업별설명서 p.196>

-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산모 1명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에서 102억 4천1백만원이 편성됨.

<표>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추경안 명세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 10,240,500	(x-) 0	(x-) 10,240,500	
사무관리비	(x-) 30,000	(x-) 0	(x-) 30,000	◦ 사업홍보, 홍보물(리플릿 등) 제작 30,000천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x-) 10,210,500	(x-) 0	(x-) 10,210,500	◦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10,148,000천원 - 40,592명*1/2(년)*1,000,000원*50% ◦ 자치구 사업홍보 62,500천원 - 2,500,000원*25개구

- 추경안 편성의 주요내용은 ① 시와 자치구가 5:5로 분담하여 산모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산후조리경비 지원금(101억 4천8백만원), ② 자치구당 250만원씩 보조하는 자치구 사업 홍보비(6천3백만원), ③ 집행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홍보비(3천만원)임.
- 산후조리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변화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실태조사 결과⁹⁾에

9) 「2021 산후조리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2022-01-26

따르면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서울특별시의 초저출산 상황을 고려할 때 산후조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후조리 경비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서울특별시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76명에서 2022년 0.59명으로 감소하며 초저출산 현상은 장기·지속화되고 있으며,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추경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식으로 저출산이라는 서울특별시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예산 우선순위의 명확성 및 예산 관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예산에서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도부터 국시비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의 2023년도 확정내시 내역의 자치구별 출생아 수¹⁰⁾에 7월 1일 시행기준으로 2023년 지원 개월 수(5개월)에 자치구 분담금(50%)을 고려하여 나온 액수임.
- 2022년도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예산의 10% 이상인 약 72억원이 불용된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방식의 추계는 일정 수준의 불용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보다 정밀한 추계가 필요해 보임.
- 사업 계획¹¹⁾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가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10) ‘20년도 시군구 출생아 수 비율로 국비 분배 (‘20년도 서울특별시의 출생아 수의 85%로 조정)

1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2023.6.2.),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가족다문화담당관-9141

할 예정임.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급
※ 다태아 출산 시 다태아 수별 지급(쌍둥이 200, 세쌍둥이 300 등)
- 지원대상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 지원기간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 지원방식 : 산모에게 100만원 현금 지급
- 이용자가 온라인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에 직접 신청하고, 자치구(보건소)에서 자격 요건 확인을 거쳐 비용지급
- 예산(안) : 10,241백만원 ('23년도) ※시·구비 5:5
- 사업비(10,148백만원), 홍보비(30백만원), 자치구 홍보운영비(63백만원)

-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결과¹²⁾에 따르면 현금성 지원에 비해 인프라 정책이 출산을 제고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금성 지원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지역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고려한 다양한 비현금성 정책 발굴이 필요해 보임.
- 현재 서울특별시 내 3개 자치구(중구, 성동, 구로)에서 올해 1월부터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개 자치구(영등포구, 강서구)는 올해 7월 1일부터 실시예정임.

〈표〉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정책

구 분	중구	성동구	구로구	강서구	영등포구
소득기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지급금액	100만원	50만원	50만원	30만원	50만원
시행일자	'23.1.1.	'23.1.1.	'23.1.1.	'23.7.1. (예정)	'23.7.1. (예정)
지급방식	현금	현금	현금	현금	현금
소요예산	구비 100	구비 100	구비 100	구비 100	구비 100

12) 박혜림, 장백산,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12.31.

- 자치구에서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서울특별시에서 전 자치구에 확대하여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볼 수 있지만 기존 자치구에서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 통폐합과 중복지원 관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임.
- 또한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동 사업에 대한 향후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산모 등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바. ‘전출금(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 사업(계속) <사업별설명서 p.221>

- ‘전출금(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 사업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¹³⁾의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실시에 따른 감면액을 보전하기 위함임.
- 한부모가족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¹⁴⁾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그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감면액을 부담해야 함.
- '23년도 동 사업의 예산은 2억 554만원으로, 추경안은 감면대상 수를 80% 감면하여 1억 6,444만원을 감액(80% 감소)하여 4,110만원이 편성되었음.

13) '22년도 기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기준 52%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복지급여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기준 60%이하임.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57호)

14)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6. 19., 2005. 3. 31.>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2. (생략)

<표> '전출금(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사업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 41,100	(x-) 205,536	(x-) △164,436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x-) 41,100	(x-) 205,536	(x-) △164,436	◦ 목표인원 수정 (80%감) △164,436천원 - △(4,282명*0.8)*4,000원*12개월

- 개정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는 '22.1.1일자로 시행되었으나 일반 회계 예산 보전 확보 시까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 자에 대해 감면지원을 시행 유예함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예산안에 한부모가족 4,401가구를 대상으로 하수도요금 감면분 보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 '22회계연도 예산액은 1억 5,844만원으로 1,188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4,656만원으로 불용률은 92.5%로 나타남.

<표> '22년 전출금(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사업 불용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예산액 (추경포함)	지출액	불용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계	(x-) 158,436	(x-) 11,878	(x-) △1,223,000	92.5%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x-) 158,436	(x-) 11,878	(x-) △1,223,000	92.5%	◦ 한부모가족 중 다자녀, 유공자가정 등 중복지원 제외되어 집행잔액 발생

- '22년도에 한부모가족 4,401가구를 대상으로 1억 5,844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한부모가족 중 다자녀, 유공자가정 등 중복지원이 제외되어 전체 예산의 92.5%가 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도 4,282가구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안에서 예산을 감추경하고 있음.

- 이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집행부서는 중복지원에 따른 제외되는 규모에 대하여 파악하여 실제 필요예산을 추계하고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사. 기타 집행실적 저조 사업

-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3년 5월말 현재까지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사업들이 발견되고 있음. 2023년도 상반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해당 예산의 집행가능 여부와 금번 추경을 통한 감액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 하겠음.

〈표〉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23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여성가족정책실 합계(243개)	3,089,858	1,449,492	46.9	
양성평등담당관 소계(51개)	97,776	52,532	53.7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4,100	2,751	67.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사업 운영	4,448	3,731	83.9	
여성발전센터 운영	7,095	3,561	50.2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	6,099	3,020	49.5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7,291	9,687	56.0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	1,763	982	55.7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1,973	1,326	67.2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16,549	8,003	48.4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103	15	14.6	용역 집행 시기 미도래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용역 5월 발주, 6월 중 계약체결 예정)
서울여담재 운영	397	204	51.4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1,006	725	72.1	
성주류화 정책수립 기반조성	60	25	41.7	

(' 23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성평등정책 거버넌스 운영	253	100	39.5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126	53	42.1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128	64	50.0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	811	339	41.8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추진	625	219	35.0	
서울 출산육아 만능키 구축	1,003	438	43.7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127	46	36.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166	70	42.2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3,538	1,889	53.4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4,402	2,532	57.5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428	225	52.6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73	49	67.1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824	545	66.1	
성폭력피해자 방문상담, 돌봄, 부대비용 지원	187	94	50.3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237	215	90.7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70	50	71.4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28	14	50.0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60	30	50.0	
여성 노숙인시설 운영(전환사업)	7,338	3,782	51.5	
여성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932	932	100.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 (보조)	4,724	2,324	49.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 (자체)	3,183	1,261	39.6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36	36	100.0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863	378	43.8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사업	451	220	48.8	
불법 성산업 감시	669	384	57.4	
시립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	372	204	54.8	
위기십대여성 사회적 안전망 구축	24	13	54.2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	802	521	65.0	
시립 늘푸른교육센터 운영(보조)	169	110	65.1	
시립 늘푸른교육센터 운영(자체)	876	567	64.7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보조)	251	163	64.9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자체)	260	145	55.8	

(' 23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1,588	256	16.1	집행시기 미도래, 6월 내 보조금 2차 교부 예정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청소년 서포터즈 모집 사업	100	10	10.0	집행시기 미도래, 6월 내 보조금 1차 교부 예정
스토킹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100	60	60.0	
스토킹 피해자 지원	462	20	4.3	집행시기 미도래, 6월 내 보조금 교부 예정
기본경비	506	144	28.5	부서 기본경비로, 월별 정상 집행예정
기금 전출금	100	0	0.0	집행시기 미도래. 6월말 2023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제2차 교부를 위해 전액 전출 예정
영유아담당관 소계(36개)	1,901,256	898,979	47.3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54,798	24,081	43.9	
어린이집 운영지원(보조)	2,889	1,444	50.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15,292	53,089	46.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33,618	14,112	42.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41,815	142,423	41.7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21,258	10,548	49.6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자체)	1,495	761	50.9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85,655	35,689	41.7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자체)	26,384	10,938	41.5	
가정양육수당 지원	39,943	24,417	61.1	
영유아 보육료 지원	523,101	279,444	53.4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07,221	99,733	48.1	
특화보육 지원(자체)	46,107	21,793	47.3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전환사업)	2,476	1,080	43.6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4,395	2,198	50.0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862	862	100.0	
보육포털사이트 유지관리	102	34	33.3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4,548	2,271	49.9	
시간제보육 운영지원(자본보조)	15	0	0.0	집행시기 미도래, 6월 내 보조금 교부 예정(5월 사업대상 선정완료)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334	217	65.0	
보육교사교육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48	16	33.3	

(' 23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보육주간 운영	100	20	20.0	집행시기 미도래, 10월 넷째주 보육주간 행사 일정에 맞추어 집행예정
생태친화형 어린이집 운영	77	38	49.4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6,848	3,019	44.1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348,017	160,090	46.0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운영	1,500	734	48.9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지원	1,050	0	0.0	집행시기 미도래, 6월중 집행예정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1,053	1,053	100.0	
어린이집 기능보강(자체)	802	802	100.0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4,735	2,611	55.1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754	345	45.8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206	72	35.0	
기본경비	65	53	81.5	
국고보조금 반환	9	0	0.0	보건복지부 반납고지서 발급 시 연내 집행예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균형발전특별회계)	19,803	1,111	5.6	집행시기 미도래, 국공립 확충심의 일정에 따라 집행예정(2차:5.3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생활SOC복합화)(균형발전특별회계)	3,881	3,881	100.0	
아이돌봄담당관 소계(24개)	150,004	73,563	49.0	
아이돌봄 지원(보조)	49,567	29,643	59.8	
아이돌봄 지원	5,766	3,323	57.6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1,278	774	60.6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보조)	1,410	793	56.2	
공동육아방 운영지원	2,016	964	47.8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98	49	50.0	
서울상상나라 운영	5,212	2,880	55.3	
권역별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1,523	0	0.0	· 서북권 사업실행 이전 유관부서에서 토지구획 정리 선행(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하여 불용방지를 위해 감추경 요청(△1,223백만원) · 서남권 연구용역비 2억원은 용역 준공후 집행예정으로, 집행시기 미도래(23.4월 계약, '24.4월 준공)

(' 23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21,466	8,174	38.1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자체)	6,740	2,923	43.4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보조)	2,021	1,067	52.8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	34,704	15,980	46.0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	65	9	13.8	자치구 사업 신청 저조로 추가 사업 신청 독려 예정
다함께 돌봄사업(학교돌봄터 기타운영비 지원)	360	168	46.7	
다함께 돌봄사업(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	794	330	41.6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자체)	4,050	2,040	50.4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보조)	60	32	53.3	
거점형 키움센터 인건비 지원	2,885	1,436	49.8	
거점형 키움센터 기자재비 지원	309	309	100.0	
기본경비	69	51	73.9	
국고보조금 반환	325	325	100.0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균형발전특별회계)	4,536	530	11.7	공간확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에 따라 예산 집행 예정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균형발전특별회계)	3,420	433	12.7	민간개발사업 준공 일정에 맞춰 리모델링 착수 예정 (양천센터: '23.6월~, 강서센 터:'24.5월~)
국고보조금 반환(균형발전특별회계)	1,330	1,330	100.0	
아동담당관 소계(46개)	671,820	289,937	43.2	
아동수당 지원	408,119	172,044	42.2	
아동친화도시 추진	397	93	23.4	집행시기 미도래 (아동영향평가, 아동종합실태조 사 용역 12월 준공, 어린이 꿈 페스타 11월 개최 예정)
아동안전보호	429	156	36.4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99,000	46,704	47.2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5,365	2,018	37.6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	595	0	0.0	자치구 재배정(6월) 후 자치구별 추진일정에 따라 집행 예정(10개 구 14개 시설)
요보호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11,890	5,300	44.6	
마음치유 그룹홈 운영 지원	300	144	48.0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210	129	61.4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9,043	3,053	33.8	

(' 23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4,464	2,123	47.6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846	336	39.7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자체)	176	89	50.6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자립지원 사업비)	1,187	642	54.1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퇴소 전 후 원스톱 일상교육 지원	182	86	47.3	
가정위탁센터, 입양기관, 결연기관 운영지원	1,590	818	51.4	
입양아동가족지원(보조)	4,353	1,734	39.8	
가정위탁아동 지원	8,157	2,495	30.6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90	23	25.6	월별 사후정산 지원 중으로, 심리치료 대상자(46명) 독려 및 대상자 추가 선정 예정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60	54	90.0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8	4	50.0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1,800	639	35.5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3,982	1,485	37.3	
아동급식지원	31,057	15,944	51.3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4,780	1,103	23.1	집행시기 미도래, 7월 2분기 예산 집행예정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3,745	2,067	55.2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63	0	0.0	보건복지부 내시인원(14명) 대비 실지원 아동 미발생, 전국적으로 불용이 높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중
위기아동 가정보호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14	0	0.0	보건복지부 내시인원(14명) 대비 실지원 아동 미발생, 전국적으로 불용이 높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중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360	44	12.2	보건복지부 내시인원(30명) 대비 실지원대상 과소 발생(9명)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	20,684	6,780	32.8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기본운영비, 추가 운영비)	4,788	2,365	49.4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22,471	10,305	45.9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특수목적형, 토요일영)	562	303	53.9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4,729	1,483	31.4	

(' 23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327	163	49.8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지자체, 법인, 개인시설)	442	381	86.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8,386	4,487	53.5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2,990	1,222	40.9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운영지원	895	422	47.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추진	305	115	37.7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지원 사업	100	50	50.0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600	360	60.0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	2	2	100.0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보조)	1,895	1,895	100.0	
국고보조금 반환	328	223	68.0	
기본경비	54	54	100.0	
가족다문화담당관 소계(71개)	253,134	126,880	50.1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운영지원	1,341	790	58.9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기능보강 지원	20	10	50.0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3,703	1,713	46.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4,131	2,423	58.7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	152	152	100.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129	89	69.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동반자녀 양육비 지원	30	6	20.0	보호시설 입소자 신청 저조로 인한 집행 저조, 지원대상 입소 시 수시 지원 예정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250	80	32.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추가지원	220	70	31.8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93	101	52.3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80	37	46.3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469	297	63.3	
가정폭력 피해자 주택 월세 지원	128	0	0.0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주택 임차료 집행 예정(7월)
가정폭력 피해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25	0	0.0	지원대상 유형 보완(나,다형→가,나,다형) 후 하반기 사업 시행 예정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346	212	61.3	

(' 23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124	62	50.0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추가지원(자체)	100	0	0.0	LH에 적정주택 공급 요청 중. 공 급 시 임대보증금 지원
공공 생리대 지원사업	271	4	1.5	사업방향 전환으로 시에서 직접 생리대 구매 및 배포 예정(6월)
서울시 가족센터 운영	1,544	944	61.1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	5,631	2,823	50.1	
가족학교 운영지원	715	362	50.6	
가족역량강화 지원	1,296	648	50.0	
자치구 가족센터건립	2,025	951	47.0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480	192	40.0	
서울시와 함께하는 나만의 결혼식 지원	33	14	42.4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3,230	1,615	50.0	
저출생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	114	49	43.0	
첫만남 이용권 지원	58,859	47,087	80.0	
임산부 교통비 지원	41,855	14,792	35.3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1,595	803	50.3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2,167	1,491	68.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10,109	4,032	39.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111	48	43.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360	174	48.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510	255	50.0	
시설 배치 사회복지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35	11	31.4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101	50	49.5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75,898	25,230	33.2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3,076	740	24.1	분기별 지급으로 2분기 배정액 자치구 집행 중, 3분기 집행시기 (7월) 미도래, 연중 정상집행 예 정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833	320	38.4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4,621	2,431	52.6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79	17	21.5	집행시기 미도래, 월별 집행예정 (외국인주민회의, 외국인주민 서 울생활살피미)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746	499	66.9	
서울시 외국인유학생 지원	75	58	77.3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60	40	66.7	

(' 23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세계인의날 행사 운영	18	0	0.0	집행시기 미도래, 용역 준공(6월) 후 집행 예정
외국인과 함께하는 서울살이 멘토링	39	12	30.8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2	2	100.0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다문화가족)	6,022	4,805	79.8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다문화가족)(자체)	2,400	572	23.8	집행시기 미도래, '23년 가족수당 단가 향상 반영하여 센터 수요조사 실시 후 3분기 예산 7월 교부 예정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9,081	6,171	68.0	
서울시 가족센터(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	213	134	62.9	
서울시 가족센터(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자체)	185	142	76.8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304	179	58.9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495	293	59.2	
다문화가족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247	195	78.9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지원	100	100	100.0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운영	53	10	18.9	집행시기 미도래, 용역 준공(12월) 후 집행 예정
위기 이주여성 안전망 구축	852	425	49.9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338	169	50.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3,314	1,598	48.2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비수급 입소자 지원	50	0	0.0	신규사업으로 시설 수요조사 실시 후 하반기 집행 예정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추가지원	60	0	0.0	시설 이전 계획이 미확정되어 하반기에 집행 예정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51	50	98.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지원	31	9	29.0	시설 신청 및 해당 시기(명절, 연말 등)에 따른 지원으로 적정 시기 집행 예정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82	41	50.0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시설 추가지원	5	0	0.0	'23년 10월 재계약(LH) 예정으로 10월 중 집행 예정
기본경비	64	54	84.4	
국고보조금 반환	26	24	92.3	

(' 23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전출금(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1,027	166	16.2	기간별 집행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 22.12월~23.2월 감면분 4월 납부 완료, 23.3월~23.5월 감면분 6월 납부 예정 (가족다문화담당관 → 물순환안전국)
전출금(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	205	7	3.4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기 수혜자는 중복 감면에서 제외되어 실 수혜인원이 목표인원보다 감소 · 23.1회 추경 시, 80%(1억6천4백만원) 감액 편성 요청 중 · 23.3월~23.5월 감면분 6월 납부 예정 (가족다문화담당관 → 물순환안전국)
1인가구담당관 소계(10개)	14,651	7,226	49.3	
안심귀가스카우트	3,807	975	25.6	집행시기 미도래 (자치구 5월 인건비 6.10. 지급 예정) ※ 자치구 재배정액(6.8.)기준 예산 집행률 50.8%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3,187	1,724	54.1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1,815	850	46.8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1,811	1,009	55.7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운영	376	189	50.3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지원	2,600	1,721	66.2	
자치구 1인가구 지원사업 공모	563	558	99.1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381	89	23.4	집행시기 미도래(사업 완료 후 지급 예정) · 1인가구포털 및 SNS운영 사업 종료 후 계약금 잔액 지급 예정 · 종합 홍보리플릿 제작비 6월중 지급 예정 · 쌍글빙글 서포터즈 운영 용역 계약 선금금 6월중 지급 예정 · 기타보상금 공모전 심사 완료 후 8월중 지급 예정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53	53	100.0	
기본경비	58	58	100.0	
아동복지센터 소계(5개)	1,217	375	30.8	

(' 23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계획 (집행률 30% 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	137	39	28.5	· 집행시기 미도래, 연간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중, 연말기준 100% 집행 완료 예정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자체)	819	237	28.9	·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현장학습 및 행사 자제, 비대면 교육, 상담 실시 · 5월 센터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로 일시보호아동(유아) 타 일시보호시설로 전원하여 행사 및 현장학습 미실시 · 7월부터 아동 현장학습 활성화 및 아이돌보미 비용 집행, 다사랑관 아동물품 구매 및 강사료 지출 등 집행 예정
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	10	2	20.0	· 집행시기 미도래로 집행률이 낮았으나, 2분기부터 역량강화교육 및 자문 등 정상추진으로 100% 집행예정임
입양활성화 지원	22	21	95.5	
기본경비	229	76	33.2	

4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¹⁵⁾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9조¹⁶⁾에 따라 성평등기금 1종이 운영 중이며,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2023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22년도말 조성액 ^㉑	'23년도 조성계획			'23년도말 조성액 ^㉒ = ^㉑ + ^㉔
	수입 ^㉓	지출 ^㉔	증감 ^㉕ = ^㉓ - ^㉔	
23,576,778	1,096,698	1,000,000	96,698	23,673,476

-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 2항¹⁷⁾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금액의 증가로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가 3억 8천1백만원이 증가하여 지출계획의 예치금 역시 동일 금액이 증가한 바, 당초대비 20%를 초과 변경되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임.

15)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6)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9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표〉 성평등기금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구 분	'23년(A) 당초예산	'22년(B) 결산반영	증 감 (B-A)
계	1,473,476	1,854,724	381,248
예치금 회수	376,778	758,026	381,248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	100,000	-
이자수입	964,858	964,858	-
기타수입	31,840	31,840	-

〈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

구 분 (정책사업)	'23년(C) 당초 예산	'23년(D) 변경(안)	증 감(D-C) (증감률)
계	1,473,476	1,854,724	381,248
비용자성 사업비	980,000	980,000	-
기본경비	20,000	20,000	-
예치금	473,476	854,724	381,248 (80.5%)

〈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천원,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당 초 (A)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지출합계	473,476	854,724	381,248	80.5
일반예산 (재무활동)	473,476	854,724	381,248	80.5
보전지출 (성평등기금)	473,476	854,724	381,248	80.5
여유자금 예치(성평등기금)	473,476	854,724	381,248	80.5
예치금	473,476	854,724	381,248	80.5

-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¹⁸⁾을 개정하면서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조정 시, 기존 ‘재무활동’(예치금의 상위 개념) 금액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동 기금변경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18) 행정안전부(2020.07.),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p.43, p.297.

현 행	개 정
③ 기금운용계획 수립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 3. 전년도 결산에 따라 기금 예치금(예치금 회수)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	③ 기금운용계획 수립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 3.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수입 계획) 금액이 변동되어 '예치금'(지출 계획)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단, '재무 활동'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2023년 성평등기금 지출계획의 예치금이 늘어난 사유는 약 230억원 규모의 예탁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금리가 2022년 1분기 1.25%에서 '22년 4분기에는 3.96%로 급상승하여 2022년 기금 수입계획의 예탁금 이자수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임.

<표>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내역 및 변경안 의회동의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당초(A)	1차 변경(B) (결산 반영)	증감(B-A)	증감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결산결과 변경안 의회동의
2019	209,131	493,686	284,555	136%	554,683	
2020	348,055	587,885	239,830	68.9%	410,416	○ (최초)
2021	400,708	389,144	11,564	2.86%	350,999	
2022	401,723	376,778	24,945	6.20%	665,478	
2023	473,476	854,724	381,248	80.5%		○ (심의예정)

- 2020년에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이 20%초과 증가에 따른 기금계획 변경안을 최초로 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는데, 이전까지는 기금운용과정에서 고유사업이 아닌 재무활동의 예치금이 20%이상 증가되거나 지출항목을 축소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의회의 의결 건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지난 2018년도부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정책사업”에는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관련 법규를 위반할 의도는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결과적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¹⁹⁾으로 사후적으로 이에 대한 하자치유를 했던 건임.

- 예산과 달리 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집행부의 자의적인 활동이 가능한 바, 집행기관은 향후 기금운용과정에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가급적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임.

19)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2020), “서울특별시 2019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p. 250.